

#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

2016년 2월 11일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 대표로 전국체육대회(동계, 하계)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들의 공적에 대한 격려와 시상을 함에 있어 객관성 있게 시상제도를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(시상범위)** 본회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, 선수 및 관계기관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. 단, 지도자 시상은 성과금으로 지급하며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 선수를 입상토록 지도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팀 또는 경기단체장으로부터 지도자 증명이 확인된 자로 한다.

**제3조(시상시기)**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실시한다.

**제4조(시상부문)** 제2조에 대한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시상한다.

1. 표창수여

〔공 로 패〕

- 종합 1, 2, 3위에 입상한 경기단체장
- 종합성적 성취단체 경기단체장  
( 대비 100%이상 향상종목으로 총점 1,000점이상 단체)

〔표 창 패〕

- 종합 1, 2, 3위에 입상한 경기단체 전무이사
- 종합성적 성취단체 전무이사  
(전대회 대비 100%이상 향상종목으로 총점 1,000점이상 단체)

[표창장]입상선수 지도자

[특별표창]특별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[감사장]입상선수 소속단체장

[최우수선수상]성적이 우수한 선수

[최우수지도자상]성적이 우수한 지도자

2. 시상금 또는 시상품 및 성과금은 「별표 1, 2」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 
다만, 본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한다.

**<2016. 2. 11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## 시 상 금 내역 표

(단위:원)

구 분	대 상	시 상 금
종 합	종합우승 단체	10,000,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
	종합준우승 단체	5,000,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
	종합3위 단체	3,000,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
성 취	종합성적 성취 단체	1,000,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
유 공	특별유공단체	500,000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

구 분		시 상 금		
신 기 록	세 계 신 기 록		1,000,000	
	한 국 신 기 록		700,000	
	대 회 신 기 록		500,000	
입상선수	팀	3연패 이상	30,000,000	
	개인	3연패 이상	5,000,000	
	개 인 전		단 체 전	
	1위	500,000	1위	20,000,000
	2위	300,000	2위	10,000,000
	3위	200,000	3위	5,000,000
	8강	100,000	8강	3,000,000

[별표 2]

### 지도자 성과금 내역표

□ 지급 기준 :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

(단위:만원)

구분	기준	해당종목	지급액		
			금	은	동
개인	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 으로 분류된 종목 <21종목>	육상, 수영, 사이클, 복싱, 레슬링, 역도, 씨름, 유도, 승마, 조정, 롤러, 태권도, 요트, 카누, 우슈, 보디빌딩, 수중, 트라이애 슬론, 빙상, 스키, 스킨스	100	50	30
	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개인전 <11종목>	양궁(개인종합, 거리별), 사격(개인전), 체조(개인 및 종목별), 펜싱(개인전), 배드민턴(개인전), 근대5종(개인전), 볼링(개인,마스터즈,2인조), 골프(개인전), 정구(개인 및 복식), 탁구(개인전), 궁도(개인전)			
단체	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 종목 중 단체로 채점하는 종목 <14종목>	육상(계주), 수영(계영), 롤러(계주), 사이클(단체추발), 수중(계영), 조정 (에이트,무타포어), 카누(K-4), 마라톤 (종합), 체조(단체), 양궁(단체), 사격 (소총, 권총단체/트랩, 스키트 단체), 볼링(3.5인조), 트라이애슬론(단체), 스키(계주)	100	50	30
단체 I	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단체전 경기 <6종목>	탁구, 정구, 펜싱, 배드민턴, 테니스, 컬링	150	100	50
단체 II	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2개종별 이하인 종목의 단체 전 경기(단 별도의 개인전을 실시 하지 않는 종목) <3종목>	근대5종(4.5종 단체), 골프, 궁도	250	100	50
단체 III	전국체전 참가규정상 순수단체전 으로 분류된 종목 <12종목>	수구, 축구, 야구, 농구, 배구, 핸드볼, 럭비, 검도, 하키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, 아이스하키	300	150	100